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관 련 자 ① 밀양시 ○○과 지방○○주사보 ○○○
② 밀양시 ○○과 지방○○주사보 ○○○
③ 밀양시 ○○면사무소(전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6.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인 “○○ 도로확·포장공사”와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계획 승인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4. 1. 16.부터 2014. 12. 31까지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인 “○○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사업계획 승인(허가)관련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별표4”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제43조를 위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밀양시 ○○과에서는

① ○○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밀양시 ○○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및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면의 “○○ 도로확·포장공사(○○리 0000번지~○○리 000번지)”를 위한 개발행위(총면적 18,659㎡, 농림지역 14,568㎡, 계획관리지역 3,777

m², 보전관리지역 314m²)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2016. 5. 4. 사업계획을 승인(허가)하였다.

② ○○~○○간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밀양시 ○○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7,500m²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m² 이상 및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면 ○○리 000번지 외 32필지의 “○○~○○간 도로(시도00호선)확·포장공사”를 위한 개발행위(총면적 15,092m², 농림지역 14,146m², 계획관리지역 483m², 생산관리지역 463m²)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2016. 8. 18. 사업계획을 승인(허가)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 (m ²)	사업자	승인기관	사업 허가일	사업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밀양시 ○○면 ○○리	18,659	밀양시장	밀양시장	'16.5.4.	'16. 5.12. ~ '19. 5.11.
○○~○○간 도로확포장공사	밀양시 ○○면 ○○리	15,092	밀양시장	밀양시장	'16.8.18.	'16. 6.29. ~ '19. 6. 28.

위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 도로확포장공사”와 “○○~○○간 도로(시도00호선)확포장공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방○ 주사보 ○○○과 지방○ 주사보 ○○○는 각각 실무책임이 있다.

2. 밀양시 ○○○○과에서는

밀양시 ○○○○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7,500m²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m² 이상 및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읍 ○○리 산000번지의 “○○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2014. 6. 24. 사업계획을 승인(허가) 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사업자	승인(허가) 기관	사업 허가일	사업기간
○○단체 자연장지 (수목장림) 조성	밀양시 ○○○읍 ○ ○리 산000번지	10,000	○○○○○ ○○ ○○ ○○	밀양시장	2014.6.24.	2014.4.23. ~6.22.

위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의 사업계획을 승인(허가)한 지방○○주사 ○○○은 실무책임이 있다.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공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계획 등의 승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